

<붙임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수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4. . .

발 의 자 : 은수미, 최재성, 이종걸
이상직, 박홍근, 이원욱
박주선, 노영민, 김용익
강동원, 배재정, 이미경
박원석, 배기운, 김재운
김동철, 장하나, 이학영
이석현, 전순옥, 이목희
홍영표, 김미희, 정진후
인재근, 이인영, 이윤석
진성준, 김현미, 황주홍
변재일, 김기식, 강기정
노웅래, 김광진, 윤관석
이해찬, 안민석, 남인순
유성엽, 한명숙, 홍의락
부좌현, 박남춘, 신경민
우상호, 김성주, 우원식
심상정, 서영교, 김승남
심재권, 박영선의원(53인)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또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물질도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이므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필요가 있고,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

별자치도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시·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관할구역 내에서 제조·수입·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총합이 10만톤 이상 등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시·도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시·군·구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도비상대응계획과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등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시·도 관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시·군·구 관리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

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 및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체의 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때 등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사.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함(안 제42조제1항).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즉시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화학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의 이름과 독성 정보 등을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함(안 제43조의2 신설).

자.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45조제3항 신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6조의3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시·도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관할구역 내에서 제조·수입·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총합이 10만톤 이상인 경우

2. 시·군·구의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을 청구하는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기타 관할 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지역 단위의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제7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화학사고에 대한 시·도비상대응계획 및 시·군·구비상대응계획) ①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하 “시·도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하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6호 내지 제9호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비상대응계획과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수립·시행·공개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 기본계획”은 “시·도비상대응계획”으로 보고, “시·군·구기본계획”은 “시·군·구비상대응계획”으로 본다.

제7조의2(시·도 및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도비상대응계획과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등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시·도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시·도 및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③ 시·도 및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1. 주민대표 혹은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3.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방환경관서, 지방소방관서, 지방교육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④ 시·도 및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시·도 및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가.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지역사회 고지)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 및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체의 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2.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배출시설의 명칭과 위치
3.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4.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5.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6. 기타 건강영향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지할 때에는 시·군·구 관리위원회(시·군·구에 시·군·구 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이 거주지 인근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주지 인근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고대비물질”을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고대비물질의 목록”을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11호 중 “사고대비물질”을 각각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있는”을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지역별 관리위원회가 부적합 의결을 한”으로,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대비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때
2.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물질을 신규로 제조 및 사용한 때
3.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물질의 배출 시설로부터 반경 3.2km 이내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500가구 이상이 입주를 완료한 때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때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고지”를 “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을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1호) 중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지역주민의”를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으로, “제1항”을 “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고지”를 “고지 및 통지”로 한다.

1.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2.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배출시설의 명칭과 위치

6. 그 밖에 건강영향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시·군·구 관리위원

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화학사고 주민 고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즉시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의 이름과 독성 정보
2. 대피가 필요한 범위와 구체적인 대피 요령
3. 개인보호 방법
4. 급성 영향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5. 기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시·군·구 관리위원회를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 ④ (생략)</p> <p>⑤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중앙행정기관의 장</u>----- ----- ----- -----.</p> <p><u>제6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 ①</u>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u>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기본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u>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u>은 시·도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u>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기본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하여 시행하여</p>

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관할구역 내에서 제조·수입·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총합이 10만톤 이상인 경우

2. 시·군·구의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을 청구하는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기타 관할 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지역단위의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제7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도기본계획 및

<신 설>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화학사고에 대한 시·도

비상대응계획 및 시·군·구비상
대응계획) ①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계획(이하 “시·도비상대응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시·
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매년 관
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이하 “시·군·구비상대응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제6조제3항제6호 내지 제9호
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시
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
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④ 시·도비상대응계획과 시·군·
구비상대응계획의 수립·시행·공
개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신 설>

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기본계획”은 “시·도비상대응계획”으로 보고, “시·군·구기본계획”은 “시·군·구비상대응계획”으로 본다.

제7조의2(시·도 및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도비상대응계획과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등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시·도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시·도 및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③ 시·도 및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1. 주민대표 혹은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신 설>

<신 설>

② ~ ⑥ (생 략)

<신 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보는 제외한다.

가.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
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
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지역사회 고지) ① 환
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
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
과 및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으
로부터 제출받은 일체의 자료
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
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
량에 대한 정보

2.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배출시설의 명칭과 위치

3.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4.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5.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6. 기타 건강영향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지할 때에는 시·군·구 관리위원회(시·군·구에 시·군·구 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이 거주지 인근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주지 인근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

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대비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때
2.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물질을 신규로 제조 및 사용한 때
3.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물질의 배출 시설로부터 반경 3. 2km 이내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500가구 이상이 입주를 완료한 때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
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
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
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
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
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
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
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4항-----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지역별 관리위원
회가 부적합 의결을 한-----
-----요
청하여야 한다. -----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
회 고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
급하는-----

-----.

1.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
량에 대한 정보
2.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배출시설의 명칭과 위
치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3.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③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3.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

4.·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6. 그 밖에 건강영향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
제1항 각 호-----
-----.

⑤ -----제4항-----

-----고지 및 통지-----
-----.

제43조의2(화학사고 주민 고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즉시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고지하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
② (생략)
<신설>

여야 한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의 이름과 독성 정보
2. 대피가 필요한 범위와 구체적인 대피 요령
3. 개인보호 방법
4. 급성 영향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시·군·구 관리위원회를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3>

지역별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제정과 6.4전국지방선거 예비후보 공개질의 사업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1. 배경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올해 4월 울산 에쓰오일 원유 누출사고까지 화재·폭발·누출사고는 작년(2013) 한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같은 최근의 사고는 기존의 화학물질 사고와는 달리 기업체 울타리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국민적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이에 전국의 2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20일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과 사고 시 '비상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를 발족했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동네 위험물질 지도'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2. 취지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 중 7개 지역단체(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 사업단/ 발암물질없는 군산만들기시민행동/ 여수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 울산시민연대 / 용산지역노동자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 인천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과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전국화시키기 위해 지역차원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제정'과 '6.4지방선거 입후보자 공개질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내용

1)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제정

7개 지역단체는 지역사회알권리법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 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을 지역 상황에 맞게 의회에 상정,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고,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주민들에게 단순히 통보되는 것이 아닌 소통되도록 하는 일련의 체계를 담았다.

지난 4월 '전남 여수시 알권리 조례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5월 충북 청주시, 6월 경남 울산시/경기 인천시/서울 성동구, 7월 전북 군산시/경남 양산시에서 지역별 추진단위가 발족

